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지방법원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1-14**
날부터 다 갠 날까지는 원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제 1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4가합67532	파면처분무효확인 등
원 고	1. A	
	2. B	
피 고	학교법인 C	
변 론 종 결	2015. 8. 28.	
판 결 선 고	2015. 10. 16.	

주 문

1. 원고 B의 소 중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4. 1. 9.자 파면처분 및 2014. 8. 26.자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3. 피고는,
 - 가. 원고 A에게 99,7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갠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 나. 원고 B에게 97,813,375원 및 그 중 95,613,375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4. 2.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대학교,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 A은 1991. 9. 1. D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2.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원고 B은 1990. 3. 1. D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3. 4. 1. 정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2014. 1. 9.자 각 파면처분 및 이후의 경과

1) 피고의 이사장은 2013. 12. 5.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3. 12. 30. 원고 A에 대하여, 2013. 12. 31. 원고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각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 9. 원고들에게 각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1차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 A

☞ F 교수와 함께 2009. 2. 불상의 일자로부터 학교 소유의 교육용 교지를 가진 'D대자연생태농장'이라 하여 임의 개간하고, 일반인에게 교지를 분양/경작하게 하고서 원고 A 교수 본인의 개인통장 계좌로 1인당 50,000원~70,000원(6평 기준)을 입금 받아 관리해 왔고, 2012. 8. 20. 교육용 교지의 무단 사용으로 인해 공동 관리해 왔던 F 교수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경징계처분(감봉 1개월)과 임대 분양금의 교비환수 처분을 받음으로서 2013년 이후로는 교육용 교지의 임의개간을 통한 분양/경작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상기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2013년도에는 회비 명목으로 회원 30여명으로부터 분양금을 원고 A 교수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해 오다 총무과에서 분양행위와 분양대금을 받은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재차 통보하자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14. 1. 9.자 파면처분 및 2014. 8. 26.자 파면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29,7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다 갠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27,813,375원 및 그 중 125,613,375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각 다 갠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014. 12. 1.부터 원고 들을 복직시킬 때까지 원고 A에게 월 9,06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월 8,892,125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013년도 월일자불상경에 분양금을 돌려주었다. 해당 교지는 이미 회원들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2013. 6. 30.까지 학교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

☞ 2013. 3. 21.경부터 원고 B 교수, F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다음카페에 'G'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D대학교 교수들이 모이는 협의회 심격을 넘어서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페의 글을 열람하도록 오픈하여 본교 교수뿐만이 아닌, 카페에 접속 하는 모든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읽기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카페를 통하여 D대학교를 폄하하고, 선대 총장과 현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처실장단, 교수, 재단, 이사장 등을 장사꾼, 배반/배신자, 송건들이라는 말과 그리고 최근 임용된 교수들에게는 기간제교수라는 비아냥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방성 글들이 최근일까지 게시되고 있고, 학교 운영과는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추측의 글들을 게시하고, 게시판을 보는 어들을 선동하였으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협력회원들은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강퇴시킴으로써 반론의 권리조차 박탈하였다. 본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일방적인 주장을 표시시키도록 하여 예곡된 정보가 보도되게 함은 물론 본인이 관리자이면서도 댓글을 통해 이를 더욱 권장 또는 방조하였다. 또한 이를 대내외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D대학교는 물론 모든 구성원에 대해 명예훼손추손과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었고,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학교질서를 어지럽히고 카페를 통하여 직원들에게는 집단행동을 선동 조장하였다.

☞ 2013. 3. 19. 불상시경 총장이 면담하고자 교무처장이 전화통보를 하였는데도 오지 않고, 또한 총장의 지시로 부총장, 비서실장, 교무부처장이 연구실을 방문하여 총장 면담 외사를 전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불참에 대한 사유제출 또는 어떤 해명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오지 않았으며, 이후 수차례 총장실로 오도록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악의적으로 통화를 회피함으로써 총장의 지시도 거부하였다.

☞ 2013. 4. 17. 교원단체 서명 강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과 2013. 5. 13.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D대학교가 3인의 공동 대표들에게 술한 협박과 미행과 감시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과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대학 주도로 침해하였다는 뚜렷한 증거 자료도 갖추지 못한 허위사실 또는 본인의 추측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서 이는 D대학교의 명예와 직원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기망한 것으로 D대학교 내 교직원들의 화합을 깨고 분열을 조장하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1-14

다.

㉞ 2013. 9. 24. D대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학 비리의 백화점인 D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고 회견하였다. 그 회견 내용의 문구를 보면 D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도저히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있으며, D대학교에 대하여 수용하려 해도 수용할 수 없는 비방 행동을 하였다. 9월 24일자 국회에 가서 D대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의 내용을 보면, 여성인권유린사건, 미행과 감시를 당했다며 D대학교를 비난하였으며, D대학교는 비리 백화점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여성인권유린사건에 관한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안이며, 설사 그 내용의 사실 유무를 떠나서도 D대학교에 몰입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D대학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교직원인 미행과 감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단지 추측만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구성원의 권익과 명예,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대학의 비방에 해당되고,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모집 등 우수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시기에 학교에 대한 흠집내기로 학사행정 운영 및 입학전형 준비와 진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다.

㉟ D대학교는 2013. 4. 6. 교무처장 명의의 'D대학교 교수님들께' 라는 서신을 보내어 본교의 마스터플랜을 조금 더 앞당겨 제2의 D대학교의 도약의 기반으로 삼는 해로 정하고 이미 시행을 시작하였거나 시행준비가 완료된 사항을 전체 교원에게 알리면서 D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자고 하였으며, 최근 공시사항을 통해서도 '본교 2020년까지 국내대학 10위를 목표로 힘찬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D대학교 내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개산사업과 향후 진행될 계획사항들에 전력을 기울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알리고, 교직원 및 학생들이 자신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D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지하게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 교수는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D대학교를 사학비리의 온상인양 외치고 D대학교를 종합 감사하라고 하며 본교를 폄하하고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신문지상 또는 인터넷상(2013. 3. 20. H신문, 2013. 4. 8. H신문, 2013. 4. 15. 성명서, 2013. 4. 17. 성명서, 2013. 5. 13. J뉴스, 다음카페, 2013. 5. 16. K, 2013. 6. 7. 국회세미나, 2013. 6. 17. H신문, 2013. 7. 26. L, 2013. 8. 30. 경기도의

회, 2013. 9. 24. 국회, 2013. 10. 8. K, 2013. 10. 8. J뉴스, 2013. 12. 2. 감사원, J뉴스, 2013. 3. 19. M/기청 'N')에 보도되게 하였고, 마치 D대학교는 학생의 등록금을 받아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식의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무책임한 비방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9월말 현재는 수시입학전형을 시작으로 하여 입학전형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모집을 위하여 학교에 대한 이미지 홍보 등을 보다 더 확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비방행위로 인해 학교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D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불특정다수의 학생들에게 학교의 지원을 포기할 개연성이 있는 업무방해행위를 자행함으로써 D대학교의 명예를 실추, 훼손은 물론 대학의 입학전형준비/진행 그리고 학사행정 진행 등에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혔다.

㊸ 교무처장 명의의 공문(가. 교무처장실 출석면담통보, 2013. 9. 26.(사유: 4월 17일 기자회견 - 2공학관, 5월 13일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 2공학관, 8월 30일 경기도의회세미나, 9월 24일 기자회견 - 국회 등에서 주장한 사실관계 확인 목적/ 나. 교무처장 면담 재통보 2013. 10. 1.(여성인권유린사건에 연루 주장 등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 유효포인 인한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공문을 발송하고 기자회견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면담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불참함을 통보하여 왔으며, 이에 당일인 2013. 10. 1.자 공문으로 2013년 10월 7일 오전 11시에 부총장 면담을 하도록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음은 물론 10월 7일 불상사경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관에서 사학비리의 대표적 사례가 본교라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의혹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특히 기자회견 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 및 관계자와 접촉하며 충장을 극감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로비하며 허위사실을 주장 유포함은 물론 명예를 훼손하였다.(증거자료 2013. 10. 8. K)

이에 2013년 10월 7일 '부총장면담 재통보' 공문을 통해 2013년 10월 10일 오후 2시 30분 부총장실에서 면담을 재통보하였으나 이 또한 불응하였다.

㊹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2항에서 '교원은 학생을 위한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교육과 학문연구' 를 교원의 주된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인 2013년 10월 7일 원고 A 교수는 '환경화학공학특론' 교과목 6, 7, 8교시의 대학원 강의가 있는 일자임에도 무단으로 결강하면서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결강에 대한 휴강계획서 또는 보강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어떠한 경로로도 허가를 받지 않음으로 이는 교직원복무규정 제11조(결강 및 결근) 제1항에 질병 기타의 사유

로 결강 또는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강계(보강계획서 첨부) 또는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 사정으로 결강을 하기 위해서는 결강을 하기에 앞서 대학원장에게 휴결강계를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하였으며, 박사 및 석사과정 재학생들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이외에도 무단으로 강의시간을 변경하거나 결강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교원의 주된 임무인 학생교육 및 지도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며 휴결강계를 제출하도록 한 교직원 복무규정도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㊺ 2013년 10월 27일 O 뉴스에서 대학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키는 뉴스보도에 동조하며 개인의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 및 호도하였다(2013. 10. 27. O 뉴스 인터뷰 내용 "제도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게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니까...") (뉴스보도자료 첨부).

위 뉴스 보도는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결론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작 및 제작된 프로그램이었으며, 의혹제기가 주된 내용이었고 확인이 되지 않은 사실을 크게 부풀려 보도한 내용으로, 이는 입학전형 준비와 진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쳐 방해가 되고 있음에 의문의 여지가 없는 바, 대학은 9월말 수시입학전형 원서 접수로 시작으로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모집 등 우수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 모집을 위하여 학교에 대한 이미지 홍보 등을 보다 더 확대해야 하고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며, 모든 대학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시기이며, 그러한 중대막대한 시기에 무책임한 비방행위로 인해 학교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D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불특정다수의 학생들에게 학교의 지원을 포기할 개연성을 유발하는 일련의 업무방해 행위임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2014학년도 졸업은 눈앞에 둔 졸업예정자는 기업의 인사관리 담당자 등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러한 무책임한 의혹보도가 진행됨에 따라 D대학교에 무슨 문제든 문제가 있다고 비취할 수 있고, 심지어는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졌겠는가라는 편협된 시각이 팽배되고, 본교의 졸업생들을 보는 시각에 편견이 대입되어 취업전선에 명백하게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결론적으로 D대학교의 명예를 실추, 훼손은 물론 대학의 입학전형 준비/진행 그리고 금년 졸업대상자의 향후 진로에 대한 악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㊻ 2013. 12. 2. J뉴스 기사를 통하여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D대 교수협의회

가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한 교비 수십억원을 돌려놓으라는 감사원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으며 D대 총장과 재단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감사원에 고발한다'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는 'P 회사 설립에 임의로 사용하다 2011년 감사원 지적과 시정조치를 받음', 둘째는 '상당한 액수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학교법인으로 배들린 점도 적발되었지만 2년이 넘도록 교비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 주장의 내용은 기사의 제목에서는 'D대 교협, 교비 50억 종편 투자한 총장 고발'로 정하면서 50억 환원에 관한 내용을 주장하는 듯하나, 실제 50억 종편투자는 감사원 감사 종료 후 교육부 보고서 주시 처분을 통해 5년 후인 2018년 환원하겠다는 보고를 원료한 상태이고, 그 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손실 없이 원금을 환원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법정 서류 제출을 통하여 해당 교수에게도 안내된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불순한 의도로 기자에게 제공하고 기사화하였다. 위 내용을 주장하면서 추가적으로 '지난 2년간의 배임혐의는 그냥 넘겨버릴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2년간의 배임행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인 허위사실로서 대학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매월 시설사용자로부터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인 문제가 부존재한 내용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다. 상기 내용을 볼 때 상기 교수는 이사회를 통해 환원될 50억에 대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고 임명권자인 학교법인 C 이사장과 기관장인 D대학교 총장을 악의적으로 무고한 해고행위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 복무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다.

㊼ 원고 A 교수는 2004년 Q 교수(화학공학과)와 "R" (D대는문집, 2004)를 발표하였는 바, 이 논문은 2005년 9월 S에 게재된 "T" (U, Q, 원고 A)와 연구내용 및 결과 부분이 80% 이상 동일할 것으로 자기복제에 해당되며, 주저자인 Q 교수도 이에 대하여 시인하였고 논문표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원고 B

㊽ 2013. 3. 21.경부터 F 교수, 원고 A 교수와 함께 공동으로 다음카페에 'G'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D대학교 교수들이 모이는 협의체 성격을 넘어서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페의 글을 열람하도록 오픈하여 본교 교수뿐만이 아닌, 카페에 접속 하는 모든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비회원에게 읽기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카페를 통하여 D대학교를 폄하하고, 선대 총장과 현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처실장단, 교수, 재단, 이사장 등을 장사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1-14

배반/배신자, 4

최근 임용된 교수들에게는 기간제교수라는 비아냥과 비방이 난무하는 비방성 글들이 최근일까지 게시되고 있으며, 본인이 관리자 중의 한 명이면서도 은유적인 글을 올리고, 댓글을 유도함으로써 악의적인 글이 올라오는 것을 권장 또는 방조하였다. 언동제 교수들에게는 연단위 계약이라는 악점을 악용하여 교수들을 선동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D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 대내외적인 명예훼손은 물론 인격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카페를 통하여 집단행동을 선동 조장하였다.

㉔ G 카페를 운영하면서 전체 공개 되어 있는 공개 게시판을 악용하여 교수협의회 활동에 동조하지 않는 본교 직원들에 대해 명예훼손, 비방, 모욕을 할 뿐만 아니라 직원노조를 설립하여 함께 활동하자며 선동행위를 하였고, 학교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전체에 대한 비하 행위를 통해 교원으로서 갖춰야 할 품위를 손상시키고 카페를 통하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함. 또한 사실과는 다른 내용으로 인식되게 글들을 올려, 제3자가 읽었을 때 직원들을 헐뜯음으로써까지 인식되게 폄하함으로써 대학내의 질서와 화합을 무시하여 어지럽히고 학사행정 진행을 방해하였다.

㉕ 2013. 3. 19. 총장이 면담하고자 교무처장이 전화통보를 하였는데도 오지 않고, 또 총장의 지시로 부총장, 비서실장, 교무부처장이 연구실을 방문하여 총장 면담 요구를 전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이후 수차례 총장실로 오도록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악의적으로 통화를 회피하여 복종의 의무를 해태하였다.

㉖ 2013. 4. 17. 교협반대 서명 강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과 2013. 5. 13.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D대학교가 3인의 공동 대표들에게 솔한 협박과 미행과 감시를 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과 인권침해가 자행되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대학 주도로 침해하였다는 뚜렷한 증거 자료도 갖추지 못한 허위사실 또는 본인의 추측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서 이는 D대학교의 명예와 직원의 자긍심을 실추시키고 기망한 것으로 D대학교 내 교직원들의 화합을 깨고 분열을 조장하였다.

㉗ 2013. 6. 7. 국회세미나에서 V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D대학교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포장하여 발표하였으며, 협의를 통하여 내부적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행정적 사안을 어떠한 행정상의 협의 절차도 없이 외부에 표출하여 외부에서

는 D대학교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㉘ 2013. 9. 24. D대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는 사학 비리의 백화점인 D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고 회견하였다. 그 회견 내용의 문구를 보면 D대학교의 구성원로서는 도저히 그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본교에서 수용하려 해도 수용할 수 없는 비방 행동을 하였다.

D대학교는 2013. 4. 6. 2013. 4. 6. 교무처장 명의의 'D대학교 교수님들께' 라는 서신을 보내어 본교의 마스터플랜을 조금 더 앞당겨 제2의 D대학교의 도약의 기반으로 삼는 해로 정하고 이미 시행을 시작하였거나 시행준비가 완료된 사항을 전체 교원에게 알리면서 D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라고 당부드렸으며, 최근 공저사항을 통해서도 '본교 2020년까지 국내대학 10위를 목표로 힘찬 출발' 이라는 제목으로 D대학교 내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개선사업과 향후 진행될 계획사항들에 전력을 기울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 등을 알리고, 교직원 및 학생들이 자신의 직분에서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D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진지하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B 교수는 명확한 증거자료 제시도 없이 D대학교를 사학비리의 온상인양 의치고 D대학교를 종합 감사하라 하며 본교를 폄하하고 문제가 있는 대학으로 신문지상 또는 인터넷상(2013. 3. 20. H신문, 2013. 4. 8. 교수신문, 2013. 4. 15. 성명서, 2013. 4. 17. 성명서, 2013. 5. 13. J뉴스, 다음카페, 2013. 5. 16. K, 2013. 6. 7. 국회세미나, 2013. 6. 17. 교수신문, 2013. 7. 26. L, 2013. 8. 30. 경기도의회, 2013. 9. 24. 국회, 2013. 10. 8. K, 2013. 10. 8. J뉴스, 2013. 12. 2. 감사원, J뉴스, 2013. 3. 19. M가정 'N')에 보도하고, 마치 D대학교는 학생의 등록금을 받아 사적으로 전용했다는 식의 도저히 옹인할 수 없는 무책임한 비방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9월말 현재는 수시입학전형을 시작으로 하여 입학전형이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2014학년도 입학전형모집을 위하여 학교에 대한 이미지 홍보 등을 보다 더 확대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비방행위로 인해 학교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 D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불특정다수의 학생들에게 학교의 지원을 포기할 개연성이 있는 업무방해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D대학교의 명예를 실추, 훼손은 물론 대학의 입학전형준비/진행 그리고 학사행정 진행 등에 막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혔다.

㉙ 9월 24일자 국회에 가서 D대 교수협의회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여성인권유린 사건, 미행과 감시를 운운하며 지면의 질질을 할애하고서 D대학교가 비리백화점이라고 발

표하였는데 여성인권유린사건에 관한 주장은 사실 무근으로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안으로 설사 그 내용의 사실 유무를 떠나서도 D대학교에 담고 있는 구성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D대학교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교직원이 미행과 감시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단지 추측만으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구성원의 권익과 명예,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대학의 비방에 해당되고, 수시 1차, 수시 2차, 정시 모집 등 우수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시기에 학교에 대한 흠집내기로 학사행정 운영 및 입학전형 준비와 진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쳤다 할 것이다.

㉚ 교무처장 명의의 공문- 2013. 9. 30. 참석연담통보(4월 17일 기자회견 - 2공학관, 5월 13일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 2공학관, 8월 30일 경기도의회세미나, 9월 24일 기자회견 - 국회 등에서 주장한 사실관계 확인 목적)과 교무처장 명의의 공문- 2013. 10. 2. 교무처장 면담 재통보 (여성인권유린사건에 연루 주장 등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 유무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 목적)의 공문을 발송하고 기자회견한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전후상황을 확인하고자 면담을 하려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이에 2013. 10. 1.자 공문으로 부총장 면담 통보 공문을 통해 2013년 10월 7일 오후 1시에 부총장 면담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당일 불상시에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관에서 사학비리를 주장하며 의혹이 있음을 주장하고 특히 기자회견 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주당 관계자와 접촉하며 총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로비하며 허위사실을 주장 유포함은 물론 명예를 훼손하였다.(자료 2013. 10. 8. K)

이에 2013년 10월 7일 부총장 면담 재통보를 통하여 2013년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 부총장실에서 면담을 재통보하였으나 이 또한 불응하였다.

㉛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2항에서 '교원은 학생을 위한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교육과 학문연구' 를 교원의 주된 임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인 2013년 10월 7일 원고 B 교수는 강의가 있는 일지임에도 무단으로 결장하면서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다. 결장을 받은 휴강계획서 또는 보강계획서 사전 제출 또는 어떠한 경로로도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 교직원복무규정 제11조(결강 및 결근) 제1항에 질병 기타의 사유로 결강 또는 결근하고자 할 경우에는 결강계획서(보강계획서 첨부) 또는 결근계를 제출하도록 하여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인사정

으로 결강을 하기 위해서는 결강을 하기 전에 대학원장에게 휴결강계를 제출하여야 하나 미제출하였다. 이는 교원의 주된 임무인 학생교육 및 지도의 의무를 해태하였으며 휴결강계를 제출하도록 한 교직원 복무규정도 위반하였다.

㉜ 2013. 12. 2. J뉴스 기사를 통하여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D대 교수협의회가 종합편성채널에 투자한 교비 수십억원을 돌려놓으라는 감사원의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며 D대 총장과 재단 이사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감사원에 고발한다' 고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는 'P 회사 설립에 임의로 사용하다 2011년 감사원 지적과 시정조치를 받음', 둘째는 '상당한 액수의 학교시설 사용료를 학교법인으로 빼돌린 점도 적발되었지만 2년이 넘도록 교비로 환원하지 않고 있다' 고 주장하였다.

그 주장의 내용은 기사의 제목에서는 'D대 교협, 교비 50억 종편 투자한 총장 고발' 로 정하면서 50억 환원에 관한 내용을 주장하는 듯하나, 실제 50억 종편투자는 감사원 감사 종료 후 교육부 보고 시 주시 처분을 통해 5년 후인 2018년 환원하겠다는 보고를 원료한 상태이고, 그 사항은 이사회를 통해 손실 없이 원금을 환원하겠다는 것으로 이미 법정 서류 제출을 통하여 해당 교수에게도 안내된 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불순한 의도로 기자에게 제공하고 기사화하였다. 위 내용을 주장하면서 추가적으로 '지난 2년간의 배임혐의는 그냥 넘겨버릴 수 없다' 고 주장하였는데 2년간의 배임행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인 허위사실로서 대학은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매월 시설사용자로부터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법적인 문제가 부존재한 내용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다. 상기 내용을 볼 때 상기 교수는 이사회를 통해 환원된 50억에 대한 내용을 악의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하고 임명권자인 학교법인 C 이사장과 기관장인 D대학교 총장을 악의적으로 무고한 해고행위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위반, 복무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것이다.

2) 이에 원고들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1차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4. 30.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 및 징계양정의 재량 일탈을 이유로, 1차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3) 피고는 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2014. 6. 26.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670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1-14

로 파면처분취: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1. 20. 피고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4누72097호).

다. 2014. 8. 26.자 각 파면처분 및 이후의 경과

1) 피고의 이사장은 2014. 8.경 재차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4. 8. 11.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각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26. 원고들에게 각 파면의 징계처분(이하 '2차 파면처분'이라 하고, 1차 파면처분과 2차 파면처분을 함께 칭할 시에는 '각 파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원고 A

㉞ W 총장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허위 사실의 지속적인 유포

원고 A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9. 24. 국회 앞에서 D대학교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열면서 "최근 W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서 상할 수도 없는 여성인권 유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대 여학생' 이었던 여성의 소송제기로 성폭행과 폭력, 협박, 갑금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외도의 차원을 넘어 성노예적 인권수탈을 동반한 일상적 폭력을 휘둘러온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D대학교의 운영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총장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비난을 하였음.

또한 2014. 2. 10. X 신문 기사를 통해서 "총장의 금품수수, 횡령, 배임, 여대생 성폭행에 대한 감사를 요구" 하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총장 및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2014. 2. 12. D대학교 앞에서 교수협의회 명의로 배포한 유인물에서 "D대 재학 중이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총장과 D대학교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최근까지도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음.

이처럼 "성폭행, 폭력, 협박" 한 사실이 마치 소송에서 확정된 것인양 "어이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하여 인신 공격을 하는 등 전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확인된 사실처럼 적시하면서 총장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였음.

㉟ W 총장의 자녀와 관련된 허위 사실의 유포

원고 A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7. 21.자 X 신문기사를 통해서 "W총장 자녀의 미국대학 입학과정에서 D대 졸업증서 위조 의혹 등이 있다" 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되게 하였음.

또한 총장 자녀가 D대학교의 허위 졸업장으로 미국대학 석사를 마치 그 학위로 병역 특례요원이 되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총장 자녀의 공익근무요원은 석사 학위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가 아닌 일반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근무에 불과하여 사실과 전혀 다름.

이처럼 원고 A 교수는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총장과 총장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D대학교의 명예까지 훼손함.

㊱ 대학 적립금을 담보로 사적인 대출 받았다는 주장

원고 A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7. 21.자 X 기사에서 "비리 의혹을 자체 조사해 W 총장이 한 건설사가 은행 등에서 365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거나 차입할 수 있도록 4,300억원대로 알려진 대학 적립금을 담보물로 활용해 지급 보증을 했다." 고 허위 사실이 보도되게 하고.

또한 2013. 8. 26.자 Y 뉴스 기사에서 "W 총장이 특정 건설사가 은행에서 36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4,300억 원대의 대학적립금을 담보로 지급보증을 썼다" 라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게 하여 W 총장 및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또한 2013. 9. 24. 국회 앞에서 D대학교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열면서 성명서에 "거액의 적립금을 예치한 은행에서 600여억 원의 돈을 차용하여 개인사업인 골프장 리조트 건설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못 갚으면 4천 3백억 원도 묶입니다." 라고 적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음.

2014. 2. 12. D대학교 앞에서 교수협의회 명의로 배포한 유인물에서 "쌓아둔 적립금은 4,300억 원입니다. 적립금을 분산 예치한 은행으로부터 쓴 이자로 대출을 받아 개인사

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적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음.

㉞ 적립금을 바탕으로 비지금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미술품 구입하였다는 주장

원고 A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7. 21. 자 X 기사에서 "W 총장과 대학 측이 1000여점의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다. 적립금을 바탕으로 비지금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미술품을 사들였다" 라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게 하고.

또한 2013. 8. 26.자 Y 뉴스 기사에서 "W 총장과 대학 측이 비지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게 하고.

그리고 2013. 11. 11. Z 기사에서 "W 총장 측이 학교 교비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해 라비들과 한국산업개발 건물에 전시하고 있다고 비지금 조성 의혹도 있다." 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게 하여 총장 및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㉟ 총장이 E대 건물을 건축한 건설사와 수상한 거래를 통해 주택을 무상으로 건축받았다는 주장

원고 A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7. 21.자 X 기사에서 "D대 학교법인인 C이 설립한 E대 다수의 교내 건물과 신텍스 신축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가 AA 자택 건축을 무상으로 진행해줬고, 이 과정에서 W 총장 일가와 건설사 간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되게 하여 총장 및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㊱ KBS방송 '추적60분' 인터뷰 관련 총장에 대한 장사꾼 발언 관련

원고 A 교수는 2014. 6. 7.자 KBS 추적60분 방송 내용 중 인터뷰를 통하여 '장사꾼 총장' 발언으로 총장과 대학의 명예를 훼손함. '장사꾼' 발언이 나오게 된 배경과 경위는 총장이 차실장 간담회 중 학교의 주요 현안이나 운영 상황에 대하여는 차실장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본인은 대학운영의 효율적 분배와 투자를 담당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한 겸양의 표현이었음. 원고 A 교수는 총장과 대화하는 위 자리에 없어 본인이 직접 듣지도 않은 내용을 '장사꾼' 이라는 단어만을 강조하여 언급함으로써 본래의 진의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제3자에게 그 의미가 다른 뜻으로 전달되도록 유도하였음. 원고 A 교수의 이러한 행위는, 총장과 주요보직자의 간담회에서 나온 말을 본인이 직접 보고, 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당시의 대화내용이나 문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장사꾼' 이라는 특정 단어를 언급하며 꼬투리를 잡아 전 국민이 시청하는 공영방송을 통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총장이 학생들을 상대로 이윤을 추구하여 부를 축적하는 부정적인 사람으로 오해하도록 악

의적으로 표현한 것은 의도적인 해고행위임. 악의적인 의도로 단어의 의미를 변형하여 당초의 발언 의도를 폄하하고 이런 악의적 내용을 반복해서 언론이나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유포하여 총장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본교를 부실대학으로 표현하고 있는 행위야말로 명백한 해고행위이며 이에 따른 징계가 불가피함.

㊱ 다음 카페 개설 및 부적절한 관리, 감독

원고 A 교수를 포함한 교수협의회는 2013. 3. 2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가칭 'G' 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D대학교 교수들이 모이는 협의회 성격을 넘어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페의 글을 열람하도록 비회원에게 읽기 권한을 부여함.

2013. 5. 5. 경 위 카페에 닉네임 AB으로 "한마디로 총장님이 먹튀할 것이라는 이야기네요. 먹튀하려는 총장님에게 상생합시다 상생합시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친 셈이네요" 라는 게시글과

2013. 6. 6.경 위 카페에 닉네임 AC으로 "제목: 총장님! 이젠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1.학생들이 낸 피갈은 등록금을 받아 무작정 쌓아놓는 일. 2.학교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만을 취하고 있는 일 3.위 1항과 2항을 위하여 저지르고 있는 각종 불법, 편법 4.위 3항 때문에 여러 사정기관과 언론기관 등에 로비하는 일 5.적립금을 쌓기 위하여 교수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장바나 시설투자 안하는 일 6.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일 7.위의 행위들에 대하여 계속되는 뻔한 거짓말" 이라는 게시글 및

2013. 6. 7. 위 카페에 닉네임 AD으로 "결국 총장님은 학생교육비와 교수월급 안쓰고 적립금 만들어 은행에 예치해서 그 대가로 돈을 빌려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거군요" 허위 사실의 게시글

등 D대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욕적인 게시글과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 등이 수 없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대내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D대학교 및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㊱ 생애노동 관련 업무방해

원고 A 교수는 F 교수와 함께 2009. 2.경부터 학교 소유의 교육용 교지를 'D대자연생태농장' 이라는 이름으로 개간한 뒤 이를 일반인에게 분양, 경작하게 하고, 회비 명목으로 본인의 계좌로 1인당 50,000-70,000(5명 기준)을 입금 받는 등 2012년까지 교육용 교지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D대학교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1-14

특히 F 교 |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아 위와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학교 측에서 재차 증거를 요청한 2013. 6. 30.까지 교육용 교지를 무단 사용하였음.

㉞ 무단 결장
원고 A 교수는 여의도 국회 정문관에서 사학비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D대학교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인 2013. 10. 7. '환경화학공학특론' 교과목 6, 7, 8교시의 대학원 강의가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결장한 채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음 또한 결장에 대한 휴강계획서 또는 보강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장에 대한 허기도 받지 않았음.

㉞ 논문 중복 게재
원고 A 교수는 2004년 Q 교수(화학공학과)와 "R" (D대논문집 2004)를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은 2005년 9월 S에 게재된 "T" (U, Q, 원고 A)와 연구내용 및 결과 부분이 80% 이상 동일한 것으로 자기복제에 해당되며, 주저자인 Q 교수도 이에 대하여 시인하였음.

㉞ 면담 요청에 대한 불응
원고 A 교수는 2013. 3. 19. 총장이 면담하고자 교무처장이 전화통보를 하였는데도 오지 않고, 또한 총장의 지시로 부총장, 비서실장, 교무부처장이 연구실을 방문하여 총장 면담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불참에 대한 사유제출 또는 어떤 해명 연락도 없이 무단으로 오지 않았으며, 이후 수차례 총장실로 오도록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악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함으로써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였음.

또한 교무처장 명의의 2013. 9. 26.자 공문(기자회견 등에 대한 사실확인)과 2013. 10. 1.자 공문(여성인권 유린 사건에 연루 주장등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 유무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을 각 발송하여,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면담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불참하였음.

2. 원고 B

㉞ W 총장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허위 사실의 지속적인 유포
원고 B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9. 24. 국회 앞에서 D대학교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열면서 "최근 W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성인권 유린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D대 여학생' 이었던 여성의 소송제기로 성폭

행과 폭력, 협박, 감금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의도의 차이를 넘어 성노예적 인권수탈을 동반한 일상적 폭력을 휘둘러온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면서 D대학교의 운영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총장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비난을 하였음.

또한 2014. 2. 10. X 신문 기사를 통해서 "총장의 금품수수, 횡령, 배임, 여대생 성폭행에 대한 감사를 요구" 하는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여 총장 및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2014. 2. 12. D대학교 앞에서 교수협의회 명의로 배포한 유인물에서 "D대 재학 중이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총장과 D대학교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최근까지도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음.

이처럼 "성폭행, 폭행, 협박" 한 사실이 마치 소송에서 확정된 것인양 "어이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라는 표현까지 하며 인신 공격을 하는 등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된 사실처럼 적시하면서 총장을 공공연하게 모욕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하였음.

㉞ W 총장의 자녀와 관련된 허위 사실의 유포
원고 B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7. 21.자 X 신문기사를 통해서 "W총장 자녀의 미국대학 입학과정에서 D대 졸업증명서 위조 의혹 등이 있다" 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되게 하였음.

또한 총장 자녀가 D대학교의 허위 졸업증서로 미국대학 석사를 마치 그 학위로 병역 특례요원이 되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나, 총장 자녀의 공익근무요원은 석사 학위를 가진 자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가 아닌 일반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근무에 불과하여 사실과 전혀 다름.

이처럼 원고 B 교수는 근거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총장과 총장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D대학교의 명예까지 훼손함.

㉞ 대학 적립금을 담보로 사적인 대출 받았다는 주장
원고 B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7. 21.자 X 기사에서 "바리 의혹을 자체 조사해 W 총장이 한 건실사가 은행 등에서 365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거나 차입할 수 있

도록 4,300억원대로 알려진 대학 적립금을 담보물로 활용해 지급 보증을 했다." 고 허위 사실이 보도되게 하고.

또한 2013. 8. 26.자 Y 뉴스 기사에서 "W 총장이 특정 건설사가 은행에서 36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4,300억 원대의 대학적립금을 담보로 지급보증을 썼다" 라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게 하여 W 총장 및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또한 2013. 9. 24. 국회 앞에서 D대학교 교수협 기자회견 공동성명을 열면서 성명서에 "거액의 적립금을 예치한 은행에서 600여억 원의 돈을 차용하여 개인사업인 골프장 리조트 건설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못 갚으면 4천 3백억 원도 뭉겁니다." 라고 적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음.

2014. 2. 12. D대학교 앞에서 교수협의회 명의로 배포한 유인물에서 "쌓아둔 적립금은 4,300억 원입니다. 적립금을 분산 예치한 은행으로부터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아 개인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적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음.

㉞ 적립금을 바탕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미술품 구입하였다는 주장
원고 B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7. 21. 자 X 기사에서 "W 총장과 대학 측이 1000여점의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다. 적립금을 바탕으로 비자금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미술품을 사들였다" 라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게 하고,

또한 2013. 8. 26.자 Y 뉴스 기사에서 "W 총장과 대학 측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게 하고,

그리고 2013. 11. 11. Z 기사에서 "W 총장 측이 학교 교비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해 라비들과 한국산업개발 건물에 전시하고 있다고 비자금 조성 의혹도 있다." 고 허위의 사실이 보도되게 하여 총장 및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㉞ 총장이 E대 건물을 건축한 건설사와 수상한 거래를 통해 주택을 무상으로 건축받았다는 주장
원고 B 교수를 비롯한 교수협의회는 2013. 7. 21.자 X 기사에서 "D대 학교법인인 C이 설립한 E대 다수의 교내 건물과 신텍스 신축 공사를 진행한 건설사가 AA 지택 건축을 무상으로 진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W 총장 일가와 건설사 간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보도되게 하여 총장 및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㉞ 다음 카페 개설 및 부적절한 관리, 감독

원고 B 교수를 포함한 교수협의회는 2013. 3. 2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카페에 가칭 'G' 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D대학교 교수들이 모이는 협의회 성격을 넘어 일반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페의 글을 열람하도록 비회원에게 읽기 권한을 부여함.

2013. 5. 5. 경 위 카페에 닉네임 AB으로 "한마디로 총장님이 멍뚱할 것이라는 이야기네요. 멍뚱하려는 총장님에게 상생합시다 상생합시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친 셤이네요" 라는 게시글과

2013. 6. 6.경 위 카페에 닉네임 AC으로 "제목: 총장님! 이젠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1.학생들이 낸 피같은 등록금을 받아 무작정 쌓아놓는 일. 2.학교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만을 취하고 있는 일. 3.위 1항과 2항을 위하여 저지르고 있는 각종 불법, 편법. 4.위 3항 때문에 여러 사정기관과 언론기관 등에 로비하는 일. 5.적립금을 쌓기 위하여 교수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장바나 시설투자 안하는 일. 6.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는 일. 7.위의 행위들에 대하여 계속되는 뻔한 거짓말" 이라는 게시글 및

2013. 6. 7. 위 카페에 닉네임 AD으로 "결국 총장님은 학생교육비와 교수월급 안사고 적립금 만들어 은행에 예치해서 그 대가로 돈을 빌려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거군요" 허위 사실의 게시글

등 D대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모욕적인 게시글과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글 등이 수 없이 게재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대내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함으로써 D대학교 및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㉞ 무단 결장
원고 B 교수는 여의도 국회 정문관에서 사학비리의 대표적인 사례가 D대학교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는 당일인 2013. 10. 7. '고급통계연구' 교과목 6, 7, 8교시의 대학원 강의가 있었음에도 무단으로 결장한 채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음, 또한 결장에 대한 휴강계획서 또는 보강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장에 대한 허기도 받지 않았음.

㉞ 면담 요청에 대한 불응
원고 B 교수는 2013. 3. 19. 총장이 면담하고자 교무처장이 전화통보를 하였는데도 오지 않고, 또한 총장의 지시로 부총장, 비서실장, 교무부처장이 연구실을 방문하여 총장 면담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면서, 불참에 대한 사유제출 또는 어떤 해명 연락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1-14

없이 무단으로
 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약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함으로써 총장의 지시를 거부하였음.
 또한 교무처장 명의의 2013. 9. 26.자 공문(기자회견 등에 대한 사실확인)과 2013. 10. 1.자 공문(여성인권 유린 사건에 연루 주장등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 유포로 인한 사실관계 확인)을 각 발송하여,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자 면담을 통지하였으나 이에 불참하였음.

2) 이에 원고들은 위원회에 2차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원회는 2014. 11. 26.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1차 파면처분에 대한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2차 파면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그 밖의 사정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구실 반환 및 개인집기 반출을 요구하면서 2014. 2. 5.에는 원고 A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10013호로 건물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3. 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의 항고 또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라20103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4. 7.경 원고들의 연구실을 폐쇄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이 D대학교 교수협회 카페에 게시한 글을 원인으로 원고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검찰청에서 2014. 11. 27.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교수지위 보전, 업무수행 방해금지, 임금 일시지급 등을

불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협을 제거하는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한 무효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93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정관 제43조의4 및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는 "교원의 정년은 만65세가 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B은 AE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 B은 65세에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최종일인 2015. 8. 31. 어머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 퇴직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교수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 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서 각 파면처분의 무효확인청구와 아울러 각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미지급임금의 청구 및 위자료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법리 및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 B의 소 중 각 파면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원고 A의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및 원고들의 미지급임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각 파면처분은 절차적 또는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차 파면처분일인 2014. 1. 9.부터 이 사건 2014. 11. 19.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4. 11. 2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2014. 11. 21.부터(원고 B의 경우 2,2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구하는 가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2014카합57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4. 10.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 2014라528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24. 위 결정 중 교수지위 보전 및 업무수행 방해금지 기각 부분을 취소하여 이를 인용하고, 임금 일시지급 부분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한 가치분이의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26. 위 2014라528호 결정 중 원고들 승소 부분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다(2015카합11호).

[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12, 14, 17 내지 22, 49, 55호증(가치번호 있는 것은 각 가치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내지 20,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의 소 중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적권으로 원고 B의 소 중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 해고무효확인 소는 회사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해고무효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14036 판결 등 참조). 또한, 면직으로 인한 퇴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받게 된 퇴직급여 등에 있어서의 과거의 불이익은 면직처분으로 인한 급여, 명예훼손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그 전체로서 면직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독립한 소로써 면직처분의 무효 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과 2014. 12. 1.부터 원고들을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임금 및 각 30,000,000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각 파면처분은 절차적·실체적으로 정당하여 효력이 있다.

나. 1차 파면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하여

1) 이사회 의결의 흠결

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징계절차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 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는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임명권자가 위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사립학교법은 교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의 징계를 함에 있어서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과정에서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1-14
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이고, 위 사립학교 관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 징계로서 행

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징계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징계를 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다) 다만, 이와 같은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시기가 언제인 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이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징계의결이 요구되면 임면권자는 해당 교원에 대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것만으로도 교원의 신분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따라서 징계의결의 요구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징계의결의 요구로부터 교원의 신분 및 지위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있는 경우 임면권자는 그 징계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이 징계의결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징계처분 자체에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점, ③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에 한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징계사유를 한정하는 효과가 있는 징계의결의 요구라고 보이는 점, ④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도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보면,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에

에 관하여 보면, 이는 원고들이 F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G'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한 다음 D대학교와 그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피고의 이사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그러한 글이 게시되는 것을 방지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회원들의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강제로 탈퇴시킴으로써 D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게시한 어떠한 게시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가 활동을 정지당하거나 강제로 탈퇴당한 회원이 누구인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러한 게시물과 회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게시물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제66조 제2항의 징계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원고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기회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서면으로 징계사유를 통보할 당시에 징계사유가 명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이상 원고들이 이에 관한 절차적 하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라. 각 파면의 실제적 하자 중 징계사유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1) 원고들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㉔ 징계사유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D대학교 교수인 F과 2013. 3. 19. 'G'(이하 '이 사건 교협'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2) D대학교 IT대학 정보미디어학과 교수 AF는 2013. 4. 14. 20:50경 같은 학과의 학과장 AG으로부터 "2013. 4. 15. 09:30까지 출근하여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

라)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들에 대한 각 1차 파면처분에 앞서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2013. 12. 5. 경 D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각 1차 파면처분에는 피고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의 징계의결이 있는 후인 2014. 1. 8. 개편된 피고의 이사회에서 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을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

2) 징계사유의 특징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임면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때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이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은 임명권자로 하여금 교원을 징계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에게도 징계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명권자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징계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나) 원고 A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㉔ 징계사유, 원고 B에 대한 ㉕, ㉖ 징계사유

다. AF이 2013. 4. 15. 09:24 출근하자 AG는 같은 날 10:30 학과장 연구실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제시하면서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AF은 서명을 하였다.

■ 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 라고 한다)
우리 교수일동은 대학기관인증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대비하여 전체 교수와 교직원 W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시점에 학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근거 없는 비방을 외부로 유출시켜 학교의 명예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 교수일동은 D대학교의 미래가 걸려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인지하고, 전력을 다해 대학기관인증 및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에 매진할 것이며, 분열과 갈등, 혼란을 조장하여 D대학교의 발전을 저해하는 교수협의회에의 활동에 대해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는 바이다.

(3) D대학교 부교수 AH는 D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2013. 4. 14. 저녁 무렵 같은 대학 계장 AI으로부터 "4. 15. 09:30 공대학장실에서 긴급학과장회의를 소집하니 반드시 참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AH은 2013. 4. 15. 09:35 D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실로 갔고, 같은 대학 학장 AJ는 AH에게 이 사건 성명서를 주면서 "12시까지 전체 학과교수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라"고 하였다. AH이 "토론이나 합의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자 AJ는 "나도 위에서 시키는 일이므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냥 되는대로 서명을 받아서 점심시간 끝난 때까지는 제출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AH은 건축공학과 교수들로부터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을 받고 자신도 서명을 하여 이를 AJ에게 제출하였다.

(4) 원고들은 F과 2013. 4. 17. D대학교 제2공학관 311호실에서 "서명강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2013. 4. 15. D대에서는 교육의 근본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09:30경 각 단과대학장이 긴급 학과장회의를 소집하여 미리 준비한 교수협의회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1-14

명서(별첨사건): 자필서명을 받아 12시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결국 그날 출근하지 않은 몇 사람과 교수협의회 공동대표 3사람을 제외한 모든 교수가 성명서에 서명을 하였다.

(중략)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3. 19. 교수협의회 발족 이후 한 달 가까이 3인의 공동대표들에게 술한 협박과 미행과 감시를 행하는 등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과 인권침해가 버젓이 자행되어 왔다.

(5) 한겨레신문은 2013. 4. 17. "교수협 반대 서명하라" D대, 교수들에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와 별도로 '미행'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지난달 재창립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이 학내에서 미행을 받는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인데, 대학 쪽은 "일부 직원의 과잉충성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다.

(6) 이 사건 교협, AK대학교 교수협의회, AL대학교 교수협의회, AM대학교 교수협의회는 2013. 5. 13. "D대학교 교수협의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D대학교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하여, 인접하여 위치한 대학의 교수협의회들을 대표하여 우리 4개 대학의 교수협의회 의장단들은 다음과 같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중략)

지난 4월 15일에 D대에서는 교육의 근본을 해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다. 학교측이 교수들로부터 교수협의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자필서명을 강요하여 받은 것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파괴를 강요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D대에서는 3. 19. 교수협의회 발족 이후 한 달 가까이 3인의 공동대표들에게 술한 협박과 미행과 감시를 행하는 등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불법과 인권침해가 버젓이 자행되어 왔다.

[인정 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8, 29, 49, 50호증,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 변

당시 피고는 수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재단회계로 처리해 P에 50억 원을 출자하였고, 감사원은 같은 해 피고에게 위 대학발전기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되돌려 놓으라고 지적하였다.

(2) 원고 B은 2013. 6. 7. 국회세미나에서 "최근 대학 사태의 사례와 문제점 - D대학교"라는 제목의 발표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교수협의회 역사
 - 2013. 3. 19. 교수협의회 재창립(공동대표 3인, 창립회원 30명, 현재 119명)
- 2013. 2. 말 자유계시판에 학생글 다수
 - "등록금 부실사용 진상을 규명합시다!"
- 학생 글의 예시
 - 정보미디어학과 : 개강한지 3주째인데 영상수업용 프로그램이 없다. 아직도 수업이 제대로 안 된다.
 - 건축공학과 : 정문 앞의 당구장 다이는 반듯한데, 실습실의 제도 다이가 울퉁불퉁해서 선이 삐뚤어진다.
- 교수 대우 열악
 - 2003년 이후 전임교수로 채용 ⇒ 매년 연봉제 계약, 매년 평가 후 재계약
 - 10년 경력 계약직 교수 연봉 < 대졸초임 연봉
 - 과도한 업적평가 요구 : KAIST 2배 수준
- 재원이 부족한가?
 - 1년 등록금 약 1,000억 원 ⇒ 인건비 300억, 경비 400억, 적립 300억
 - 적립금 4,000억 원 ⇒ 전국대학 중 4위
 - 종편 P에 50억 원 투자 ⇒ 종편투자 대학 중 1위
 - 적립금 4,000억 원 연이자 : 80억 원
 - 100명 계약직교수 연봉 2,000만 원 인상하려면 ⇒ 연 20억 원 소요

(3) D대학교 학생인 AS 등 88명은 2013.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W, AN을 상대로 등록금환불을 구하는 소(2013가합54364)를 제기하였고, 2015. 4. 24. 위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3. 4. 17. "서명강요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2013. 5. 13. "D대학교 교수협의회 탄압에 대한 규탄 연대 성명서"를 통해 주장한 내용인 ① D대학교가 교수들에게 이 사건 교협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성명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사실, ② D대학교가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교협의 공동대표 3인(원고들, D대학교 교수 F)을 미행하고 감시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위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한 위 내용은 모두가 허위이며, 원고들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내용공표의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7 내지 19, 48 내지 5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 A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 ㉡, ㉢, ㉣ 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 ㉥, ㉦, ㉧ 정계사유, 원고 B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 ㉩, ㉪, ㉫ 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 ㉭, ㉮ 정계사유

가) 인정사실

(1) D대학교 총장 W와 피고의 이사장 AN은 부부지간이다. W, AN의 딸 AO은 AP 사장 AQ의 차남 AR와 부부지간이다. 2011년 AP 종합편성채널 P이 출범하였는데,

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4) D대학교 총장 W와 교제한 사실이 있는 AT는 2003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인한 외상 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및 이로 인한 속발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위 질병이 W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W에게 위 질병의 치료와 거주지 제공을 요구하였다. W는 AT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하고 AT에게 서울 송파구 AU 소재 아파트를 거주지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W와 AT는 2010. 11. 2. W가 AT에게 치료비조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010. 11. 2. 8,000만 원을 지급하고, AT가 위 아파트에 2011. 3. 31.까지 약 5개월 동안 임시로 거주한 후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는 날 W가 AT에게 나머지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W는 2010. 11. 2. AT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AT는 2012.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W를 상대로 "W가 1989. 1. 25. AT를 때려 우측대퇴골경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2003. 5. 28.경 외상후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및 속발성 관절염, 우측고관절의 동통 및 운동제한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AT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2012가합73047)를 제기하였다. W는 2013. 3. 7. 같은 법원에 AT를 상대로 "AT는 2010. 11. 2. W와 사이에 AT가 2011. 3. 31.까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퇴거하고 금전 요구 내지 협박, 비방, 업무방해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AT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AT가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퇴거를 거부하고 부당한 요구와 협박, 비방, 업무방해행위를 계속함에 따라 위 약정은 해제조건 성취로 실효되었으므로, 기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하며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여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1-14

손해금의 지급

18085)를 제기하였으나, 2015. 2. 11. 위 본소

및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쌍방이 항소하였는데 2015. 9. 16. 서울고등법원은 AT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W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15나10686).

(6) 이 사건 교협과 한국사립대학 교수회연합회는 2013. 9. 24. "정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인 D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학재단은 피 같은 등록금을 학생을 교육에 제대로 쓰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습니다. D대학교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D대는 십여 년에 걸쳐 등록금 40% 넘게 넘겨서 4,300억 원 적립금을 쌓아왔습니다. 액수로는 전국 4위, 등록금 기준으로는 1위입니다. 다른 학교들은 물론 기부금이나 수익사업으로 모았지만, 재단진입금이 거의 없는 D대는 등록금으로만 쌓은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의 하나는 턱없이 적은 실험실습 예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노후된 장비와 협소한 공간 등의 열악한 환경 속에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식 이하의 교수처우로 남긴 돈입니다. 2003년 이후 백 명 가까운 임용교수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연구업적과 초저임금 연봉계약을 요구하는 임용약정서를 매년 작성하게 하여 이득을 남긴 것입니다. 노예계약이나 다름없는 교권 유린과 침해입니다. 교수만 피해자가 아니라 학생도 피해자가 됩니다.

W 총장은 학교의 교비를 자신의 지갑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립금을 산처럼 쌓아놓은 그늘 아래 D대학교 재단 이사장의 남편인 W 총장은 이상한 일들을 벌여 왔습니다. 거액의 적립금을 예치한 은행에서 600여억 원의 돈을 차용하여 개인사업인 골프장 등 리조트 건설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이 돈을 못 갚으면 4,300억 원도 묶입니다. 게다가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은 학교 돈 50억 원을 사단회사인 종편인 P에 출자하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교비로 환원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은 성격상 등록금이나 다름없는 돈입니다. 이 부분들은 영백허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W 총장이 집권하고 있는 D대는 비리백화점입니다. 최근 W 총장은 대학의 총장으로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여성인권유린 사건에 연루된 것이 드러났습니다. D대 여학생이었던 여성의 소송제기에 의해 성폭력과 폭력, 협박, 감금 등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외도의 차원을 넘어 성노예적 인권수탈을 동반한 일상적 폭력을 휘둘러온 것입니다. 너무 어이없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러 온 사람이 교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교수들과 교직원들을 이간시키며 미행과 감시 등으로 사찰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학생에 대한 인권탄압도 심각합니다. 또한 각종 명목으로 교비를 횡령하였습니다.

D대 W 총장은 스스로를 '장사꾼' 이라고 칭합니다. 가족인 부부가 총장과 재단 이사장을 나눠서 하는 대학에서 어찌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이 가능하겠습니까?

(7) AT는 2013. 9. 25. 개최된 D대학교 개교기념식장에서 'D대 총장의 혼인빙자 불륜 및 피소사건의 전말'이라고 적힌 유인물을 뿌리며, D대학교 총장 W의 도덕성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AT는 위 자리에서 "W 총장이 학교 기획조정실장이던 시절, 결혼을 하자는 말에 속아 5년간 교제했다. W 총장은 나를 의심하며 발가벗긴 채 폭행을 일삼았다. W 총장은 성폭행을 일삼고 낙태를 시킨 것은 물론, 나를 밀쳐 넘어뜨려 장애(장애 6급)를 안고 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8) O는 2013. 10. 27. "학교 돈은 재단 삼것짓?...학생들 소송제기"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한 사학재단(피고)이 학교 돈 수백억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그 수익금을 재단 일가가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인 50억 원을 학교가 아닌 재단회계로 처리한 뒤, 재단 일가와 사돈 관계에 있는 종편채널에 투자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 학교재산인 미술품들을 재단 일가의 리조트 건물 등 개인적 공간에 걸어두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등록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면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반환소송까지 내는 등 투명한 학교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

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A은 위 보도 중 인터뷰에 응해 "제도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모든 게 한 사람에 의해 좌우되니까..."라고 말하였다.

(9) X는 2013. 7. 21., Y투데이는 2013. 8. 26., Z는 2013. 11. 11. D대학교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도를 하였다.

● X 2013. 7. 21.자 기사
D대 교수협의회는 이 같은 비리의혹을 자체 조사해 "W 총장이 한 건설사가 은행 등에서 365억 원을 저리로 대출받거나 차입할 수 있도록 4,300억 원대로 알려진 대학 적립금을 담보로 활용해 지급보증을 했다"고 21일 폭로했다. 또 "W 총장을 비롯한 대학 측이 1,000여 점 이상의 미술품을 매입하거나 기증받아 소유해오고 있다"며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했다.

● Y투데이 2013. 8. 26.자 기사
지난달 21일 'X'에 따르면 교수협은 W 총장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W 총장이 특정 건설사가 은행에서 36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4,300억 원대의 대학 적립금을 담보로 지급보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중간생략) 이날 교수협 측은 W 총장과 대학 측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 Z 2013. 11. 11.자 기사
교수협은 (중간생략) "W 총장 측이 학교 교비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해 '라비돌'과 '한국산업개발' 건물에 전시하고 있다"고 비자금 조성 의혹도 제기했다.

(10) 2014. 2. 12. D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된 이 사건 교협 명의의 글이 배포되었다.

- D대 재학 중이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하였습니다.
- 쌓아둔 적립금은 4,300억 원입니다. 적립금을 분산 예치한 은행으로부터 쓴 이자로 대출을 받아 개인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11) 교육부는 2014. 2. 10.부터 같은 달 25.까지 피고 및 D대학교에 대한 종합감

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감사결과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의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 2011학년도부터 2013학년도까지 합계 492명의 교원과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임용 탈락된 경우 민사, 형사, 행정적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교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임용계약을 작성	【대학교】 ○ 경고 6명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 2010회계연도부터 2012년도까지 당해연도 착공이 불가능한 건물의 신축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을 편성하는 등 세출예산을 과대편성 하여 907억 원의 이월금이 증가하고, - 적립금 사용계획 수립 없이 669억여 원의 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2013. 2. 28. 기준 3,244억여 원 적립 - 이에 따라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까지의 이월자금을 제외한 수입 대비 지출액 비율은 77.6%로 평균 교육비 환원율은 85.3%에 그침 ● 특히 2010회계연도부터 2012회계연도의 등록금 수입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 비율 평균은 각각 0.88%와 0.25%로 수도권 종합대의 평균 2.13%와 2.79%의 41.23%와 8.98%에 그침	【대학교】 ○ 경고 6명 ○ 통보 - 예산을 과대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 적립금 및 차기이월금이 학생교육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항목별 집행계획을 수립·시행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 대학에서 보관 중인 미술품 717점과 총장 개인 업체 보관 미술품 370점 등 합계 1,087점을 총장 개인 소유 미술품으로 목록을 작성·관리(2003년 최초 작성)	○ 시정 - 대학 관리 미술품 중 총장 개인 소유로 분류한 277점을 총장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1-14

	<p> 정을 요구하자, 교내 보관 미술품 717점 중 277점을 총장 소유로 분류하고, 이 중 240점을 총장 개인업체인 ㈜○○○로 반출</p> <p>○ 교비 매입 및 수증처리 미술품 16점을 활용하지 않고 소장고 등에 보관</p>	<p>W로부터 회수하고, 구매 증빙 등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 개인 소유로 분류 조치</p>
<p>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절</p>	<p>○ 이사장의 출장에 대해 별도 내부결재 없이, 동행한 총장의 출장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출결의만 작성</p> <p>○ 2011. 4.부터 2013. 6.까지 총장, 이사장 등의 국외출장 6회에 대해 33,588,000원(법인 3,079,000원, 학교 30,509,000원)의 출장비를 초과 지급하고,</p> <p>- 2회의 국외출장에 대해 체재비 7,213,000원을 중복 집행</p> <p>○ 이사장과 총장은 2012. 1. 처위생 및 간호학과 시설건학 목적으로 7일간 미국출장을 실시하면서, 이 중 2일을 여행 등 개인일정 실시</p> <p>- 2013. 10. 자매대학과의 교류협정 체결 등을 목적으로 11일간 일본출장을 실시하면서, 이 중 2일을 이사장의 신병치료 등 개인일정 실시</p> <p>○ 2010. 3.부터 2014. 2. 감사실 현재까지 교수 AV 등이 실시한 14회의 출장에 대해 출장복명서를 미정구</p>	<p>【학교법인】</p> <p>○ 시정(회수)</p> <p>- 초과지급된 국외출장비 3,079,000원을 이사장으로부터 회수하여 법인회계에 세입 조치</p> <p>【대학교】</p> <p>○ 시정(회수)</p> <p>- 초과지급된 국외출장비 30,509,000원을 총장 W 등 출장자로부터 회수하여 교비 회계에 세입 조치하고,</p> <p>- 중복지급된 국외출장비 7,213,000원을 총장 W로부터 회수하여 교비회계에 세입 조치</p>
<p>14. 업무추진비</p>	<p>○ 2009. 7. 7.부터 2011. 1. 31.까지 3,007,000원을</p>	

집행 부당	총장 사적용으로 사용	
<p>33. 학교 홈페이지 관리 부적절</p>	<p>○ 2013. 6. 9.부터 2013. 12. 13.까지 학생 및 교원이 작성한 홈페이지 게시물 36건을 무단 삭제</p> <p>○ 일부 D대학교 졸업자, 휴학자, 퇴직자가 학교를 비방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학교 홈페이지 '의견나눔터' 접근 금지</p>	<p>【대학교】</p> <p>○ 경고 4명</p>

[인정 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4, 18, 49, 30 내지 34, 36 내지 40호증, 을 제20 내지 22, 35 내지 38, 41, 54, 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이 2013. 6. 7. 국회세미나에서 "최근 대학 사태의 사례와 문제점 - D대학교"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내용, 이 사건 교협이 2013. 9. 24. "정부는 사학비리의 백화점인 D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사립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립하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를 통해 발표한 내용, 원고 A이 2013. 10. 27. O에 인터뷰한 내용인 ① 피고가 D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교육에 쓰지 않고 과도한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어 학생들은 열악한 학습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② W, AN과 AQ이 사돈관계이고, 피고는 2011년 AP 종합평생채널 P 출범 당시 수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재단회계로 처리해 P에 50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감사원은 같은 해 피고에게 위 대학발전기금 전액을 교비회계로 되돌려 놓으라고 지적한 사실, ③ W가 AT에게 폭행 등 인권유린을 하였다는 사실, ④ W가 D대학교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 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위 공동성명서 발표, 인터뷰가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D대는 비리백화점", "단순한 의도의 차원을

넘어 성노예적 인권수탈을 동반한 일상적 폭력", "장사꾼" 등 일부 과장되거나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발언과 발표의 전체적인 취지와 내용, 그와 같은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와 같은 표현만을 특정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한 위 내용은 모두가 허위이며, 원고들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내용공표의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0 내지 23, 31, 36 내지 39, 41 내지 45, 47, 54,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원고 A에 대한 2차 파면처분 ㉔ 징계사유 및 원고 B에 대한 2차 파면처분 중 ㉔ 징계사유

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들이 F와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G'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한 후 그 카페에 D대학교와 총장에 대한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이 게시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D대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데, 그 게시 글은 전반적인 취지가 '피고가 D대학교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교육에 쓰지 않고 과도한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 환경 및 교수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총장 W가 D대학교의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적립금을 예치한 은행으로부터 개인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공표의 공익성도 인정되므로 그러한 게시 글을 방치한 것이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게시글 중에 일부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취지와 게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와 같은 표현만을 특정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한 위 내용은 모두가 허위이며, 원고들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내용공표의 공익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51, 52, 54,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원고들에 대한 2차 파면처분 중 ㉔, ㉕ 징계사유

가)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X가 2013. 7. 21. "D대, 적립금 4,300억 담보로 지급보증"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사를 보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들(이 사건 교협)은 W 총장, W건설사 등 외부시행사공건설업자와 관계가 의문점 투성이 라고 설명했다. (중간생략) E대 다수의 교내 건물과 신텍스(컨벤션센터) 신축공사를 진행한 건설사가 W 총장 일가족 소유의 AW의 리모넬링과 AA 저택 건축을 무상으로 진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W 총장 일가와 건설사간 수상한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간생략) 교수협의 회 측은 또 W 총장의 (중간생략) 자녀의 미국 대학 입학과정에서 D대 졸업증명서 위조 의혹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나) 그러나 위 기사에 언급된 이 사건 교협 측의 주장은 W와 건설사 사이의 거래 관계 또는 W 자녀의 졸업증명서에 관하여 의문점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를 허위사실의 유포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5) 원고 A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㉔ 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㉔ 징계사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1-14

수입은 각각 제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입학 보증금·계약보증금 등 보관금과 잡종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A이 위 생태농장의 회원들로부터 받은 공동경비가 피고 또는 D대학교의 수입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

가) 인정사

(1) D대학교 교수 F은 2005년 D대학교 후문 근처에 있는 황무지에 텃밭을 하는 것에 관해 D대학교로부터 허락을 받아 동료교수들에게 텃밭 농사를 같이 짓자고 제안하였고, 2008년부터 원고 A 등 총 9명의 교수와 강사 1인이 이에 참여하였다.

(2) 위 교수들은 하수 유지관리, 쓰레기 처리, 농장 출입구 도로 보수 및 관리, 전기시설 관리 및 전기세 납부, 씨앗 및 모종과 각종 비료 확보 등 생태농장 운영에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발생하자 평당 1만 원 정도의 공동경비를 내기로 하였고, 이를 원고 A이 소속된 학과의 조교인 AX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게 되었다.

(3) F은 일반인에게 텃밭을 경작하게 하고 공동경비를 수령한 점에 관해 2012. 9. 4. 피고로부터 갑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D대학교는 생태농장 폐쇄결정을 하였으며, 피고는 F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수원지방법검찰청은 2014. 5. 28. 혐의없음(중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5, 18, 49, 5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살펴건대, 원고 A이 2013년에 회비 명목으로 회원 30여명으로부터 분양대금을 원고 A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한 사실에 관하여 을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원고 A이 2012년까지 교육용 교지를 무단사용 함으로써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는 "법인과 학교의 재무와 회계는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과 사회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의무와 그 설립목적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6조는 "법인과 학교의 모든

의견이 아닌 추측과 허위사실 ... 대학의 비방'과 'C 모든 가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짓밟는 무책임한 행동'은 매우 자의적이고 그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이 사건 교협은 2013. 10. 6. D대학교 부총장 BA에게 "지난 9. 24. 사교원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문제를 제기한 경위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교협대표 3인과 교협 1인에게 개별면담요청에 대한 D대 교협의 답신이다. 교협대표 1인이 적당한 시간에 부총장과 면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라는 공문을 보냈다.

(4) D대학교 부총장 BA는 2013. 10. 7. 원고 A에게 "부총장면담통보(2013. 10. 1.)는 D대 교수로서 교수님 개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출석하여 의견표명을 요구하는 공문이다. 따라서 그에 대한 회신이나 출석은 개인적으로 하여야 마땅하다. 면담일시 : 2013. 10. 10. 부총장실"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 제18, 44, 45, 49호증, 을 제31, 32, 5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살펴건대, D대학교 교무처장이 2013. 9. 26., 2013. 9. 30., 2013. 10. 1., 2013. 10. 2., D대학교 부총장이 2013. 10. 1., 2013. 10. 7., D대학교 총장이 2013. 3. 19. 각 원고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을 제31, 5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가사 원고들이 D대학교 측의 면담요청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① 위

(2) 따라서 원고 A이 위 규칙 제4조, 제6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6) 원고 A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㉔, ㉕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㉔ 징계사유 및 원고 B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㉔, ㉕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㉔ 징계사유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교협은 2013. 8. 20. D대학교 총장 W에게 "지난 8. 7. 총장이 보내온 교협대표들과의 면담제안에 대해 3인의 교협대표는 8. 9. 회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우선 이에 대한 교협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답변을 드린다는 공문을 보냈다. 총장님을 발신으로 하여 교협대표들에게 정식 공문을 보낸다면 대화에 응할 것이며 교협대표 3인의 일정상 다음 주 화요일 이후 언제라도 대화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2) 이 사건 교협은 2013. 9. 30. D대학교 교무처장 AY에게 "교협의 공동대표 3인과 AZ, AH 교수는 2013. 9. 27.에 '교무처장실 출석 면담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개별적으로 전달받았다. 교협에서는 교무처의 문서에 대해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교협에서는 D대 총장이 결재한 문서에만 답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교무처장 명의의 통보문서에 교협에서 발표한 수차례의 기자회견 내용이 '대학 발전

각 면담요청이 이 사건 교협의 기자회견 등에 관해 추궁하기 위한 것일 뿐 업무상 지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자회견 등에 관한 면담은 이 사건 교협 공동대표 3인이 공동으로 하거나 공동대표 중 1인이 하였다는 이 사건 교협 측의 답변이 불합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7) 원고 A에 대한 1차 파면처분 ㉔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㉔ 징계사유 및 원고 B에 대한 1차 파면처분 ㉔ 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 중 ㉔ 징계사유 원고들이 2013. 10. 7. 국회 기자회견을 위해 각 맡고 있는 대학원 수업을 결강한 사실, 위 원고들이 위 결정에 관해 사전에 대학원장에게 휴·결강계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8) 원고 A에 대한 1차 파면처분 중 ㉔ 징계사유 및 2차 파면처분 중 ㉔ 징계사유 가)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융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나)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 A이 2005. 9. S에 게재한 논문이 과거 자신이 게재한 논문과 거의 동일하여 중복게재에 해당한다는 것인데, 그로부터 위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가 있던 2013. 12.경 및 2014. 8.경까지 2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마. 각 파면처분의 실제적 하자 중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원판결문에 관한 것(원고 A에 관한 1차 파면처분)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6-01-14

① 원고들에
 ① 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의 ② 정계사유, 원고 B에 관한 1차 파면처분의 ③ 정계사유와 2차 파면처분의 ④ 정계사유)뿐인 점, ② 갑 제42, 4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원고 A은 2013. 10. 7. 수업에 관해 수강생들에게 미리 휴강을 공지하였고 2013. 12. 11. 보강수업을 한 사실, 원고 B이 맡은 과목은 박사과정 과목으로, 환경에너지공학과에서는 박사과정 강의를 교수 재량에 맡기되 대개 한 학기에 3-4회 강의를 하고 과제물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원고 B은 위 과목에 관해 2013년도 2학기에 총 4회의 강의를 하였고 나머지는 과제물로 대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면, 위 인정되는 정계사유에 대해 파면의 정계처분을 하는 것은 정계제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원고 A의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에 대한 1차 파면처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각 파면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계제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모두 효력이 없다.

사. 원고들의 미지급입금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각 파면처분이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 A과 피고 사이에는 여전히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는 원고 B의 정년인 2015. 8. 31.까지는 유효한 근로관계가 존속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리고 위 각 1차 파면처분 당시 2013년경 원고 A의 월 평균 급여액이 9,064,000원, 원고 B의 월 평균 급여액이 8,892,125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피고가 임금 지급을 중단한 2014. 1. 9.부터 2014. 11. 20.까지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99,704,000원(= 9,064,000원 × 11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12. 1.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9,06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B에게는 피고가 임금 지급을 중단한 2014. 1. 9.부터 2014. 11. 20.까지는 원고 B이 구하는 바에 따라 97,813,375원(= 8,892,125원 × 11개월) 및 그 중 95,813,375원에 대하여는 2014. 11. 21.부터, 2,2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5. 4. 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4.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12. 1.부터 원고 B이 정년에 도달한 2015. 8. 31.까지 월 8,892,125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 또는 직위해제한 경우나, 그 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이나 직위해제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여러 사실들과 그 밖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파면하였다거나, 원고들에 대한 정계사유로 된 사실이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정계에 나아갔다는 등 원고들에 대한 위 각 파면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소 중 각 파면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B의 미지급입금 청구와 위자료 청구 및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동
	판사	김정성
	판사	전명재